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도이치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도이치자산운용(주)
3. 작 성 기 준 일 : 2011년 12월 23일
4.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1년 12월 28일
5.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 6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dws-korea.com](http://www.dws-korea.com),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  
서면문서 :
8.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필드

#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모집(판매)예정 기간
  3. 모집(판매)예정 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투자운용인력
  7. 투자실적 추이 (세전기준)
  
- III.   매입 환매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 IV. 요약 재무 정보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도이치 DWS 빅스트 이머징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l	종류 C-e	종류 C-W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2049	72050	99373	99374	99375	99376	80026	74715	93914

2. 모집예정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10 조좌

- 주 1)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판매 가능합니다.
-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 3)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펀드존속기간 :

-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설정 1 년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분류 :

- 가.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나.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
- 다.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추가형.단위형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도이치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서린동 영풍빌딩 19층 (대표전화:02-724-7400)

### [모 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 (1) 업무 위탁 운용사 및 내용

해당펀드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해외위탁운용사	디더블류에스 파이낸스 서비스 지엠비에이치 (DWS Finanz-Service GmbH)
업무 위탁범위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운용지시, 단순매매업무 등

####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운용사명	디더블류에스 파이낸스 서비스 지엠비에이치 (DWS Finanz-Service GmbH)
주요 주주	디더블류에스 홀딩스 & 서비스 (DWS Holding & Service GmbH)
회사 연혁	설립일 : 1992.9.30. KABA Beteiligungsgesellschaft mbH 설립 사명 변경 : 1997.1.29 자로 현 DWS Finanz-Service GmbH 로 사명 변경
회사 주소	Mainzer Landstraße 178-190 Frankfurt am Main, Germany

\* 동 펀드의 해외위탁운용사는 2012년 1월 1일부로 디더블류에스 인베스트먼트 지엠비에이치 (DWS Investment GmbH)로 변경 됩니다.

#### (1) 업무 위탁 운용사 및 내용

해당펀드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해외위탁운용사	디더블류에스 인베스트먼트 지엠비에이치 (DWS Investment GmbH)
업무 위탁범위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운용지시, 단순매매업무 등

변경된 필드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운용사명	디더블류에스 인베스트먼트 지엠비에이치 (DWS Investment GmbH)
주요 주주	디더블류에스 홀딩스 & 서비스 (DWS Holding & Service GmbH)
회사 연혁	DWS Investment GmbH(이전:DWS Deutsche Gesellschaft für Wertpapiersparen GmbH)는 도이치은행 및 기타은행에 의해 1956년에 설립.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
회사 주소	Mainzer Landstraße 178-190 Frankfurt am Main, Germany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1)모투자신탁	100%이하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비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단기 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이하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만기가 1 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1)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주식”이라 한다)
2)집합투자증권	5%이하 (단, ETF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단, ETF는 30%까지 투자가능, 외화자산에만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20%까지 가능)

변경된 필드

3)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p>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p> <p>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p>
4) 자본 시장법 시행령 268조 제3항에 의해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 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		
5)기타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li> <li>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이내인 상품에 한정됨)</li> <li>3. 상기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li> </ol>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 -자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국가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이머징 국가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에서 발행되어 상장 또는 등록되어 있는 주식 및 그 밖의 국가에 상장된 이머징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국가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이머징 국가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에서 발행되어 상장 또는 등록되어 있는 주식 및 그 밖의 국가에 상장된 이머징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하며 헤지

변경된 필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등을 이용하여 헤지할 예정입니다.

-환헤지 전략-

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파운드화 표시 자산: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50% 이상이며, 시장상황 또는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전망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헤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헤지방법,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헤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헤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목표 환헤지 비율대로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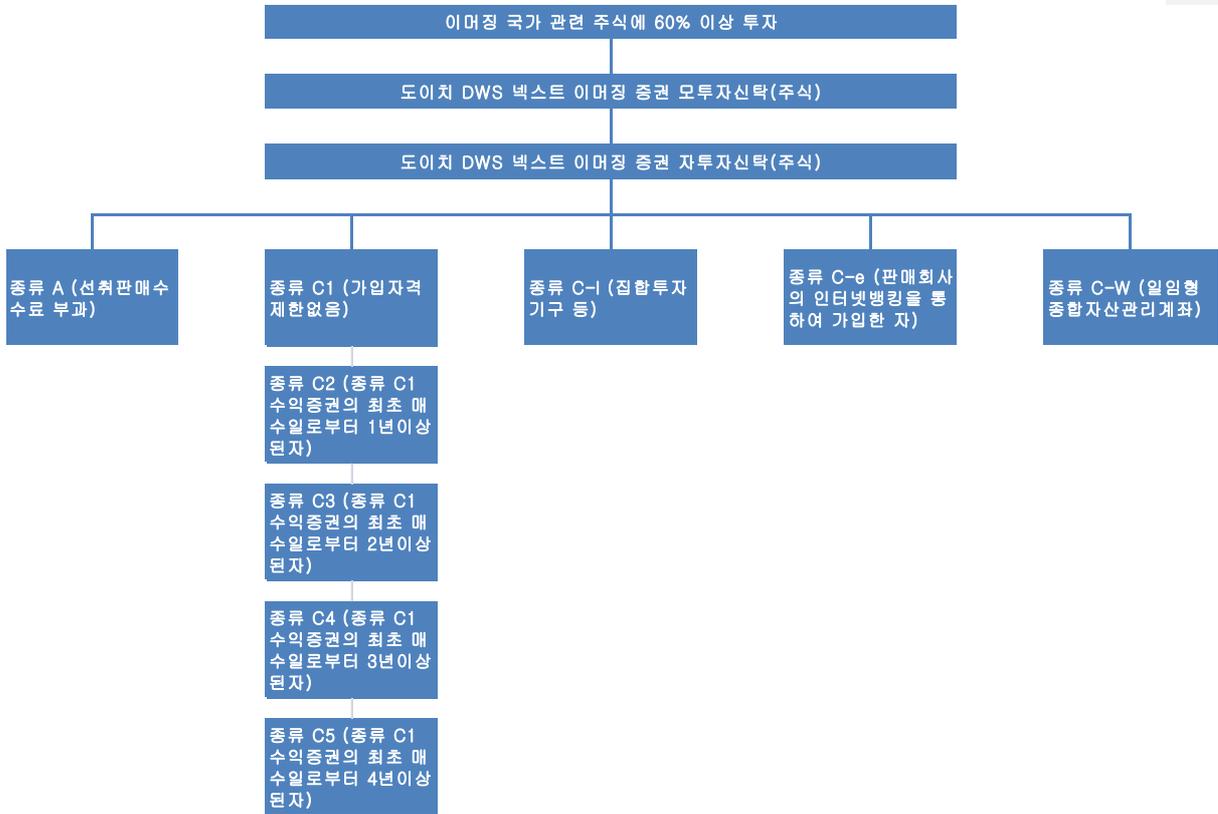
비교지수: MSCI EM Index 95% + 콜금리 5%

(MSCI 지수: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이머징 지역의 선별된 우량주 위주로 구성하여 지수화한 MSCI EM Index는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실질 투자 비중 90% 이상)를 모두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행위는 종류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이루어집니다.

\*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및 종류 C5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 전환 됩니다.

#### 4. 주요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품가입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 일반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변경된 필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해외주식등 가격변동 위험	개별 해외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국가들의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환율변동 위험	<p>이 투자신탁의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하며 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등을 이용하여 헤지할 예정입니다.</p> <p>-환헤지 전략-</p> <p>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파운드화 표시 자산 :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50% 이상이며, 시장상황 또는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전망 등에 따라 환헤지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p> <p>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헤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헤지방법,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헤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p> <p>※ 상기 헤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목표 환헤지 비율대로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p> <p>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p>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신탁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개별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	---------

변경된 필드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하는 국가 등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환매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결정일까지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기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해외자산 투자관련 가격평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자산과 관련, 발행자, 자산보관 및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기타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등이 해당자산의 가격 및 수량 등 기준가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잘못 또는 지연하여 공시하거나 통보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사유들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은 채권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은 주로 해외에 상장·등록 또는 거래되는 유가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5 등급중 1 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투자신탁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투자위험등급 기준>

등급	위험수준	내용
----	------	----

변경된 필드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 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구조화된 파생상품투자신탁(원금보존형 포함)
2 등급	높은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3 등급	중간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4 등급	낮은 위험	-국공채 및 회사채 등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MMF

#### 6.운용전문인력

( 기준일 : 2011.07.31 현재 )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이정원	1974	차장	37	6,638 (억좌)	도이치자산운용 운용팀 (2005.06 ~ )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자산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 운용 규모: 해당사항 없음

####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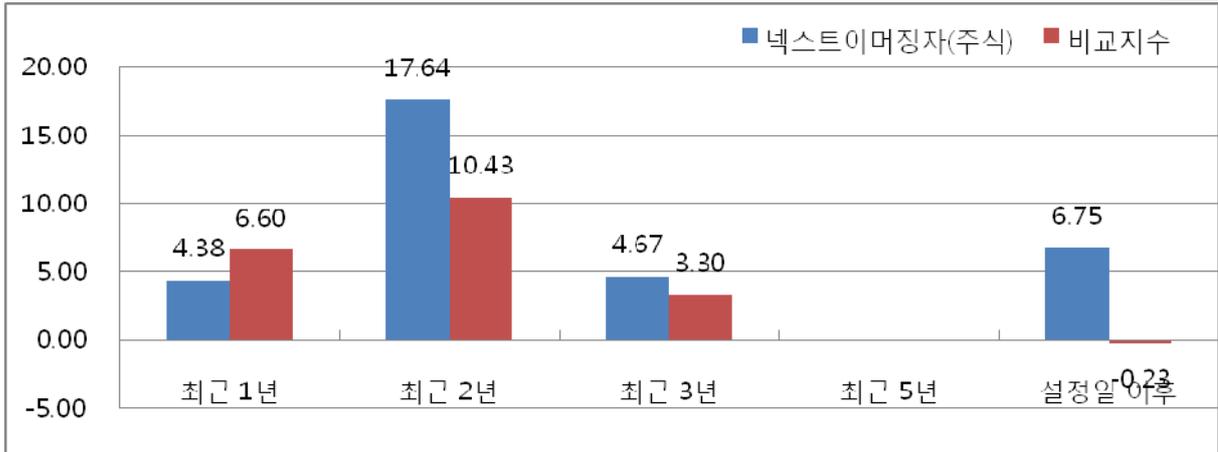
#### 도이치 DWS 넥스트이머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펀드매니저	Michael Altintzoglou, CFA, Assistant Vice President 이머징 마켓 주식 펀드 매니저, 프랑크푸르트, 독일
운용자산규모	-
과거운용경력	2008년 DWS Investment 입사 HSBC Global Asset Management 유럽주식 담당 애널리스트로 근무 Ludwig-Maximilians University 경영학 석사

####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변경된 필드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0.08.01 ~11.07.31	09.08.01 ~11.07.31	08.08.01 ~11.07.31		07.07.30 ~11.07.31
넥스트이머징자(주식)	4.38	17.64	4.67		6.75
종류 A	2.46	15.49	2.68		4.73
종류 C-e	1.92	14.84	2.09		0.41
종류 C-I	3.40	16.53	3.65		1.15
종류 C1	1.90	14.68	1.82		3.80
종류 C2					-6.99
종류 C3					-6.81
종류 C4					-6.89
비교지수	6.60	10.43	3.30		-0.23

(주 1)비교지수 : MSCI EM Index 95% + 콜금리 5%

(MSCI 지수: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이머징 지역의 선별된 우량주 위주로 구성하여 지수화한 MSCI EM Index 는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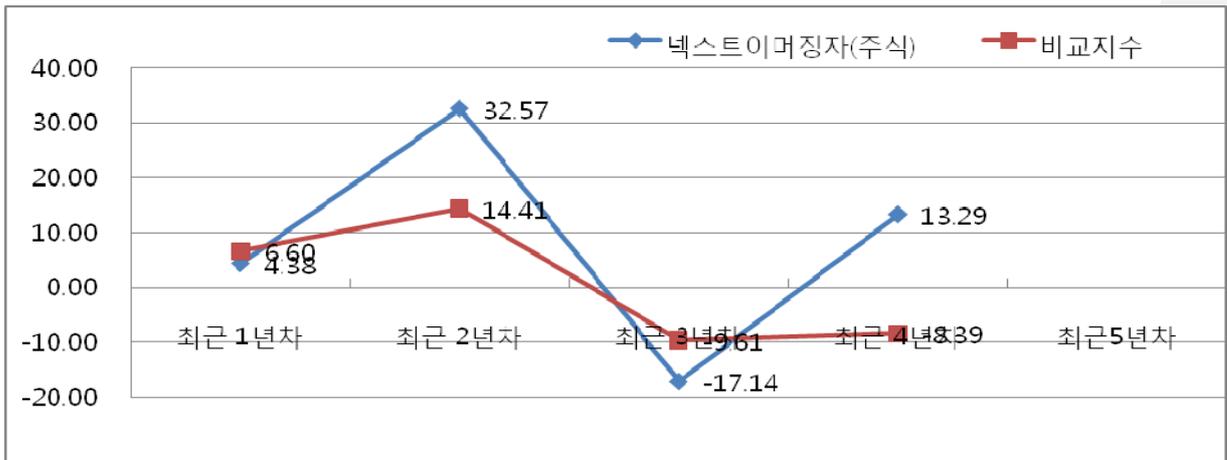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변경된 필드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0.08.01 ~11.07.31	09.08.01 ~10.07.31	08.08.01 ~09.07.31	07.08.01 ~08.07.31	07.07.30 ~07.07.31
넥스트이머징자(주식)	4.38	32.57	-17.14	13.29	
종류 A	2.46	30.17	-18.84	11.18	
종류 C1	1.90	29.05	-19.72	9.99	
종류 C-e	1.92	29.39	-19.32	-4.55	
종류 C-l	3.40	31.34	-17.99		
종류 C2	16.19				
종류 C3	16.41				
종류 C4	16.31				
비교지수	6.60	14.41	-9.61	-8.39	

(주 1) 비교지수 : MSCI EM Index 95% + 콜금리 5%

(MSCI 지수: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이머징 지역의 선별된 우량주 위주로 구성되어 지수화한 MSCI EM Index 는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변경된 필드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III 매입, 환매, 전환 관련 정보

#### 1. 수수료 및 보수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종류 A	종류 C-1	종류 C-e	종류 C-W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1)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2)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4)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5)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 억이상 취득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500 억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	온라인가 입자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계좌 를 통하여 가입한 자	부과시기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이내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전환시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징구				환매시	
종류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가입자격	주 2)					부과시기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변경된 필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징구	환매시

주 1) 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 2)종류형 C-W 는 작성일 현재 미설정 종류형 입니다.

주 3) 종류 C1, C2, C3, C4 및 C 의 가입자격

- 종류(Class)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
- 종류(Class) C2 수익증권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자
- 종류(Class) C3 수익증권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된 자
- 종류(Class) C4 수익증권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된 자
- 종류(Class) C5 수익증권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된 자

\*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종류 A	종류 C-e	종류 C-I	종류 C-W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온라인가입자	1)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2)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4)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5)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 억이상 취득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500 억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	일임형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부과시기	
부과 비율 (연간,	집합투자 업자보수	0.8400	0.8400	0.8400	0.84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9350	1.4180	0.0300	0.0000	

변경된 필드

%)	신탁업자 보수	0.0580	0.0580	0.0580	0.0580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0.0250	0.0250	0.0250	0.0250	
	기타비용	0.0023	0.0000	0.0023	-	사유 발생시
	총보수· 비용	1.8603	2.3410	0.9553	0.9230	-
	합성 총보수· 비용*	1.9203	2.4019	1.0156	0.9230	-
	증권 거래비용	0.0647	0.0684	0.0668	-	사유 발생시

구분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가입자격		제한없음	종류 C1 수익증권 의 최초 매수일로 부터 1년 이상된 자	종류 C1 수익증권 의 최초 매수일로 부터 2년 이상된 자	종류 C1 수익증권 의 최초 매수일로 부터 3년 이상된 자	종류 C1 수익증권 의 최초 매수일로 부터 4년 이상된 자	부과시기
투자 신탁 보수 (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0.8400	0.8400	0.8400	0.8400	0.8400	최초설정 일로 부터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신탁업자 보수	0.0580	0.0580	0.0580	0.0580	0.0580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기타비용	0.0020	0.0000	0.0019	0.0019	-	사유 발생시
	총보수· 비용	2.4250	2.3230	2.2249	2.1249	2.0249	-
	합성 총보수·	2.4810	2.3886	2.2932	2.1890	2.0249	-

변경된 필드

	비용*						
	증권 거래비용	0.0590	0.0751	0.0706	0.0734	-	사유 발생시

단, 종류A 및 종류C-e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보수율은 다음의 보수 계산 기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됩니다.

종류 \ 기간	2012.01.17 ~2013.01.16	2013.01.17 ~2014.01.16	2014.01.17 ~
종류 A	0.910%	0.885%	0.860%
종류 C-e	1.275%	1.133%	0.990%

\* 모두자산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종류형 C-W 는 작성일 현재 미설정 종류형 입니다.

(주 1)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자산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연도 : 2010.07.30 ~ 2011.07.29]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연도 : 2010.07.30 ~ 2011.07.29]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자산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자산탁(자투자자산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자산탁(자투자자산탁)이 모두자산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자산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6) 종류형 C-W 수익증권은 작성일 현재 미설정 수익증권으로서 이 종류형의 기타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 및 증권거래 비용은 종류형 A수익증권의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본 C-W 종류형 수익증권의 설정 후 발생 비용은 상기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종류형 A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97	712	1,161	2,495

변경된 필드

종류형 C1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54	768	1,299	2,875
종류형 C-e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46	729	1,209	2,636
종류형 C-1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04	328	575	1,309
종류형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5	298	523	1,190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 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됨을 가정하여 예상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주 3) 종류 A 수익증권 및 종류 C-e 수익증권 은 2011 년 1 월 17 일을 최초 투자시점으로 가정하여, 보수 계산 기간 별 차등 보수율을 적용하여 예상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해외에서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일정 한도(14%)내에서 아래의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원천 징수세액의 환급 금액은 한국 및 투자대상국가의 조세 정책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급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변경된 필드

투자자는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2010 년 12 월 20 일 현재 최고한도 세율 36.3% (소득세 33% 및 주민세 3.3% 포함)) 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수익증권의 실물양도 등의 방법으로 거래되어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는 이익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등은 원천징수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2010 년 12 월 20 일 현재 최고 한도세율 24.2%(법인소득세 22% 및 법인주민세 2.2% 포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본 투자신탁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 및 규정, 정부 정책, 본 투자신탁 및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본 투자신탁 및 본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74 조제 3 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투자신탁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투자신탁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 년 1 월 1 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 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dws-korea.com">www.dws-korea.com</a> ):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2) “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수익증권의 전환절차” 에 따라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의 잔고를 최초로 일괄하여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또는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또는 종류 C5 수익증권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제 30 조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일괄하여 전환하는 날에 공고되는 종류 C1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2) 매입, 환매 및 전환 절차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Class) A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 징구 방법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
2. 종류(Class)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
3. 종류(Class) C2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자
4. 종류(Class) C3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된 자
5. 종류(Class) C4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된 자
6. 종류(Class) C5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된 자

변경된 필드

7. 종류(Class) C-I 수익증권 :
  - 1)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2)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
  -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 4)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 5)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 억이상 취득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500 억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
8. 종류(Class)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 बैं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9. 종류(Class)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3)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발표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 (나) 오후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다)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나. 환매

### 1)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나) 오후 17시 이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다)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 (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전환절차 및 방법

\* 전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괄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및 종류 C4 수익증권의 잔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전환을 청구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종류 C1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C1 수익증권을  
(종류 C1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입 또는 전환된 시기를 불문하고)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 C2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C2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입 또는 전환된 시기를 불문하고)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 C3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C3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입 또는 전환된 시기를 불문하고)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 C4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C4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입 또는 전환된 시기를 불문하고)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 C5

## 2) 수익증권의 전환 처리 방법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 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만약 전환일(“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언급된 1년, 2년, 3년, 4년이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전환일로 봅니다.
- 2)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날의 17 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 수익증권의 전환요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 3) “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전환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 2 부.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로 매수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최소 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추가 매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변경된 필드

- 4) “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 만약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될 수 있습니다.
- 5) 판매회사는” 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수익증권의 전환절차”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IV 요약 재무정보

대차대조표

[단위 : 원]

항 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 2011.07.29 )	( 2010.07.29 )	( 2009.07.29 )
운용자산	16,901,106,414	21,995,558,094	19,048,042,254
증권	16,764,560,736	21,837,551,673	19,011,272,18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36,545,678	158,006,421	36,770,074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960,606	85,955,695	22,659,362
자산총계	16,902,067,020	22,081,513,789	19,070,701,616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680,977	85,094,276	22,417,199
부채총계	680,977	85,094,276	22,417,199
원본	16,126,863,382	19,790,100,654	22,584,375,303
수익조정금	-416,148,341	-413,707,425	318,285,895
이익잉여금	1,190,671,002	2,620,026,284	-3,854,376,781
자본총계	16,901,386,043	21,996,419,513	19,048,284,417

손익계산서

[단위 : 원, %]

항 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 2010.07.30 - 2011.07.29 )	( 2009.07.30 - 2010.07.29 )	( 2008.07.30 - 2009.07.29 )
운용수익	1,190,671,002	5,718,610,723	-3,854,376,781
이자수익	4,245,221	4,996,725	2,594,853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186,425,781	5,713,613,998	-3,856,971,634

변경된 필드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3,098,584,439	0
당기순이익	1,190,671,002	2,620,026,284	-3,854,376,781
매매회전율	0.00	0.00	0.00

변경된 필드